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직무순직자 보상 등 강화 및 공무원 건강안전관리 체계 구축〉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04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 정비]	
1.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위험직무 정비(안 제5조제4호)	5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요건 및 대상 확대(안 제39조제3항)	13
3.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 등(안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20
[공무원 재해예방 등 건강안전관리 체계 구축]	
1. 총괄적 검토	29
2.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규정 마련 등(안 제46조, 제46조의2 신설)	32

3.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등(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각각 신설) …	37
4.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체계 구축(안 제46조의5 신설) ………	48
5.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안 제46조의6 신설) ……………	55
6.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체계 마련(안 제46조의7 신설) ………	58
7. 재해예방 사업 등 재원 마련의 근거 정비(안 제48조 등) ……………	67
8. 재해예방 사업 등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제3항) ……………	75

[기타 : 용어의 정비]

1.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정비(안 제16조제2항 등) ……………	77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할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①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위험직무 정비(안 제5조제4호), 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 요건 및 대상 확대(안 제39조제3항), ③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보완(안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신설)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재해예방 등 건강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의 책무를 부여하는 등 책무 규정 마련(안 제46조, 제46조의2 신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는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각각 신설), ③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체계의 구축(안 제46조의5 신설), ④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 근거의 마련(안 제46조의6 신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사후관리 등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체계 마련(안 제46조의7 신설), ⑥ 재해예방 사업과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비용부담의 원칙 정비 및 재해보상부담금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

로의 확대·개편 등 재원 마련의 근거 정비(안 제48조 등), ⑦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제3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는 법률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안 제16조제2항 등)을 담고 있음.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대주제별로 구분하여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각 개정사항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 정비]

1.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위험직무 정비(안 제5조제4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3. (생략)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 11. (생략)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분쟁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 방첩 활동 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5. ~ 11.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현행	개정안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생략)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제4호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의 범위에 대해 ①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② 간첩 첩포 및 방첩 활동, ③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이 2020.12.15. 개정(법률 제17646호, 전부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형법」 중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정보 기능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편되었음.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대비표>

구 분	개정 전 (제3조제1항 각 호)	개정 후 (제4조제1항 각 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1. 다음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 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구 분	개정 전 (제3조제1항 각 호)	개정 후 (제4조제1항 각 호)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수 사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삭제>
보안업무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국가안보 등 위해자 활동 대응	-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사이버공격· 위협 예방 및 대응	-	4. 다음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구 분	개정 전 (제3조제1항 각 호)	개정 후 (제4조제1항 각 호)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업무 기획 및 조정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기 타	-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관련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라목, 제5조제2항(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 및 부칙 제5조제5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변경 사항을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4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5조제4호 중 1) 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①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위험직무에서 삭제하고(가목 삭제), ② 강제수사의 방법에 해당하는 “간첩 체포” 직무를 삭제하며(나목 중 ‘간첩 체포’ 부분 삭제),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안보 등 위해자 활동 대응 직무를 반영하여 동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위험직무로 추가

하는 한편(다목), 4)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정보 기능이 구체화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5조제4호다목의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직무를 “분쟁지역 등에서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으로 정비¹⁾하고 있음(가목).

아울러,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직무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이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험직무의 범위에 관한 개정사항이 개정법률 시행 전으로 소급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면서(제1항) 2024년 1월 1일 전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 조치를 두고 있음(제2항).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위험직무를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근거법의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첩 활동”과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가 개념상 상호중첩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법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법 적용에 있어 혼

1) 현행법상으로도 “분쟁지역 등에서의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이 위험직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등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호의 정보도 분쟁지역 등에서 수집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위험직무로 볼 수 있음.

선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 활동”의 개념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안 제5조제4호다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이하 “국가안보 등 위해자 대응조치”라 함)로, 이는 나목에 따른 “방첩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²⁾

개정안은 안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방첩 활동”의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위험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목에 따른 “국가안보 등 위해자 대응조치”는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에 한하여 위험직무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목에 따른 “국가안보 등 위해자 대응조치”가 나목에 따른 “방첩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나목을 별도로 위험직무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목에 따른 “국가안보 등 위해자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2) 국가안보 등 위해자의 범위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국민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정보활동”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그 개념이 “방첩 활동”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

위험직무와 나목에 따른 위험직무로서 “방첩 활동”의 범위가 상충적으로 해석되어 법 적용상 혼선을 초래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볼 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안 제5조제4호나목과 다목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위험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3) 안 제5조제4호 중 나목(“방첩 활동”)을 삭제하는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 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39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현행	개정안
	제3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이나(제2항), 경찰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제3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구 분	기준 금액	지 급 액	
유족보상금 (일시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4년) 552만원	• 대간첩 작전(경찰)	기준금액의 60배(3억3.1천)
		• 위험직무순직	기준금액의 45배(2억4.8천)
		• 순직	기준금액의 24배(1억3.2천)

자료: 인사혁신처

경찰공무원의 대간첩 작전이라는 위험직무에 대한 특례 규정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군인의 전사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형평성에 맞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1)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요건이 되는 위험직무 재해의 범위에 현행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외에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2) 현행법 제39조제3항 중 동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경찰공무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조문 인용에 관한 법문 표현(“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부분)⁴⁾을 삭제하고 있음.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는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호⁵⁾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제1호⁶⁾에 따른 “전사”를 의미하는 것으로,⁷⁾ 개정안은 “전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11. (생략)

5)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6. (생략)

②·③ (생략)

6)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사”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간첩 작전을 비롯하여 적과의 교전 등 “전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직무의 요건이 공무원의 직종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는 대간첩 작전에 해당하는 직무는 경찰공무원 외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고,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군인의 “전사”에 해당하는 위험직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특례 규정의 요건 및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7의 전사자 분류기준표상 “대간첩 작전”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안 제39조제3항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전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요건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3. (생략)

③ (생략)

- 7) 「군인 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전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7의 ‘전사자 분류기준표’에 따르고 있음.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사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전에 사망한 사람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공무원의 직종에 관계없이 그 직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는 군인에 대해 적용되는 「군인사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전사” 개념을 인용한 것인데, 현행법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원칙적으로 “전사”에 관한 사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제5조제11호(“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에 따라 “전사”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나,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험직무의 실체적 요건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제39조)에서 사실상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 “전사”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과 예우를 군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전사”의 요건은 「군인사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서 “전사”의 의미에 대해 독자적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⁸⁾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험직무순직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전사 시 지급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사망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례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사”의 요건과 관련한 법문을 일부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8) 「군인사법」 등 법률의 개정으로 “전사”에 대한 정의 또는 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9)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등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3.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 등(안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부분을 삭제하고(안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각각 삭제), 2)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더라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 수행이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직무에 준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생략)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③·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삭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칙> 제6조(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현행	개정안
	전에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제 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의 보훈 관련법상 예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각각 삭제)

현행법 제59조제2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훈 관련법상의 예우와 관련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로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원화하고 있음.

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의 “순직군경” 및 “순직공무원”¹⁰⁾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상의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¹¹⁾은 “국가의

10) ‘순직군경’(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순직공무원’(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제4조제1항제14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11)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제2조제1항제1호)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예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보훈보상대상지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짐.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에 대한 주요 예우 및 지원 비교>

구 분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대상지원법)
예우 및 지원의 내용	- 유족 보훈급여 지급(월 201~236만원) - 교육·취업·의료 등 유족 지원 - 국립묘지 안장 대상	- 유족 보훈급여 지급(월 140~143만원) - 교육·취업·의료 등 유족 지원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지원법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을 삭제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의 예우라는 보훈상의 원칙을 법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제6조제4항 단서¹²⁾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재해사망공무원’(보훈보상대상지원법 제2조제1항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12)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호13)에 따라 별도의 보훈심의 없이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경찰·소방공무원 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훈심의 없이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인 바,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입법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별도의 보훈심의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 관련법상의 예우는 사실상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의 예우로 일원화될 것인 바, 현행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의 내용에 맞추어 그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략)

13)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①·② (생략)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 (생략)

5.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구속력있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훈 관련법에 따른 예우에 있어서 법률적 차원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¹⁴⁾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시행령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상의 특례 규정(별도의 보훈심의 생략)이 폐지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지원법에 따른 예우에 관한 제3호 및 제4호를 다시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14) 국가유공자등예우법 및 보훈보상대상지원법에 따른 등록 및 결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제2항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이들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다는 보훈의 원칙을 밝히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볼 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상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존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안 제59조제5항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그 신분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일반 공무원인 경우도 있는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경우에는 그 신분에 따라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 비교>

구 분	주요 예우 사항(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순직군경	- 유족 보훈급여 지급(월 201~236만원) -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 국립묘지 안장 대상
순직공무원	-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 위험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별도 심의절차 필요)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 수행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는 전투기 훈련 중 추락하여 사망한 군무원(2022년 2명), 산불진화 과정에서 추락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2019년 1명) 등 예외적으로 그 신분이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순직군경” 인정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공무원의 직종에 관계없이 그 직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¹⁵⁾ 국가유공자등예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봄.

15)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 재해예방 등 건강안전관리 체계 구축]

1. 총괄적 검토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상으로 재해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외)에 대해서는 동법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의 복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의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마련,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건강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 체계 구축,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체계 마련, 재해 예방 사업 등 재원 마련의 근거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보건안전 등에 관한 독자적인 법규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정직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¹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규범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일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의 제도를 신설함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 등

16)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재해예방 관련 개별 법률 현황

적용대상	근거법률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포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근무여건 개선,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운영 등 -정신건강 등 검사(경찰병원 등 이용), 특수건강진단 등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근무여건 개선,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관리, 재원 조달·운영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교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센터 지정

운영 방안을 확인·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봄.

2.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규정 마련 등(안 제46조, 제4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안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관련 시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예방 관련 시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안 제46조제2항, 제46조제3항 신설), 3)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등 공무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6조(재해예방) ① ----- ----- ----- ----- -----이하----- ----- --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6조는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사혁신처장의 재해예방 관련 시책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에 관하여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당위적 차원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 역할에 관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을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안 제46조제1항),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상 재해 예방 관련 시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는 한편(안 제46조제2항), 공무상 재해의 객체에 해당하는 개개 공무원에 대해서도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등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안 제46조제3항).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담보하는 한편,

공직을 구성하는 개개 공무원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여 입법 목적의 실효성 있는 달성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7조는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⁷⁾

제47조는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이라는 서비스 체계에 있어 제46조에 따른 “재해예방”에 상응하여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사혁신처장의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중장기적으로 제47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서도 규범력을 강화하여 공무원상 재해와 관련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안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 제46조(재해예방)의 조항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4. 공무원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도 제46조에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등(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각각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46조의3 신설), 건강안전협의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u>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u> ② <u>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u> ③ <u>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u> 1. <u>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현행	개정안
	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건강관리의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관·건강

현행	개정안
<신설>	<u>안전담당관의 업무·자격·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6조의4(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건강안전협회의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u> <u>③ 건강안전협회의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1) 안 제46조의3에서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기관별로 구축·운영하여야 할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 안 제46조의4에서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한 협의체로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먼저, 안 제46조의3에 따른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관별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재해예방 업무 총괄)과 “건강안전담당관”(건강안전책임관 보조)을 지정하고,¹⁸⁾ “건강관리의”(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 및 건강지도관에 대한 지도 업무 수행), “건강지도관”(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 수행) 및 “안전지도관”(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 수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8) “건강안전책임관”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조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의 지정은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성원별 역할(안)>

구 분	내 용
건강안전책임관	-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 수립·추진 총괄
건강안전담당관 (책임관 보조)	- 건강안전관리규정 및 건강안전 시행계획의 작성 및 이행 - 재해예방 교육 및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관리
건강관리의	- 공무원 건강관리 업무, 건강지도관 지도·조언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건강지도관	- 건강검진 수검여부 관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등
안전지도관	- 위험요인 진단,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자료: 인사혁신처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기관의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민간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제15조),¹⁹⁾ 그 외

19)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제16조부터 제19조까지),²⁰⁾ 의료인력으로 “산업보
 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²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20)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
 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
 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
 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5조).²²⁾

개정안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공공 부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무 현장별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그리고, 안 제46조의4에 따른 건강안전협의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예방 사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정보 및 의견의 교류, 상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정된 인력과 물적 시설의 공유 방안 강구(소규모 기관의 공동 자원 활용 방안 강구 등)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봄.²³⁾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하여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주체를 “국가기관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기관의 지위, 유형, 규모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개별 국가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그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개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각급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행정청 등)이나 부속기관 등 소속기관, 합의회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외에 자문위원회 등 국가기

23) 개정안은 안 제46조의5(기본계획 수립 등)제3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6조의7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지원, 심리검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제외)이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건강안전책임관의 직급 등 자격 요건과 연계하면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의 범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률에서 구체적인 행위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의 범위를 우회적으로 건강안전책임관의 직급이라는 요건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정해지도록 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을 관할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이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기관장으로 교육장은 제외되고,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도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렇게 볼 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위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이행 주체로서 각급 기관의 장의 범위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입법례²⁴⁾를 참고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⁵⁾

2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내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8. (생략)

25)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

아울러, 개정안은 안 제46조의3제3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46조의3제4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가 건강관리의등의 배치 및 위탁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의등의 자격 요건, 인력 배치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등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대통령령을 통해 제시하려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사항을 법문에 반영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등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4.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체계 구축(안 제46조의5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5(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현행	개정안
	<u>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u>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연도별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시행계획의 평가·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는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을 인사혁신처장의 재해예방 지원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58조제4항은 “의료·직무·사회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계획의 마련”을 인사혁신처장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행령에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 조사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괄해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의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공공 부문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통한 피드백 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예방 사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5년마다) 및 연도별 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연도별 계획, 기관별 시행계획 등 정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인사혁신처장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자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각 기관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자율적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관별 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환류를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²⁶⁾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반면,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별로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 등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사무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 개정안 제46조의3제5항은²⁷⁾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각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 보이는 점, 안 제46조의5제6항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

26) 인사혁신처는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각 기관별 재해예방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

제46조의3(건강안전관리체계 등) ①~④ (생략)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략)

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²⁸⁾²⁹⁾

-
- 28) 인사혁신처는 시행계획과 건강안전관리규정은 상호보완적인 추진체계로 각 기관은 건강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추진하되 시행계획에 따라 계획-시행-환류하는 과정에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현실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 시행계획은 실태 조사 등 점검·평가·환류 체계의 기초자료로서 시행계획을 통해 기관의 위험요인 특성별 관리 방향을 확인하여 점검·지도·지원할 필요가 있고 시행계획의 작성을 통해 전체적인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관리 방안과의 연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점, 유사 사례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9) 각 기관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자율적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관별 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환류를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 및 안전에 대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 기관의 관심과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봄.

5.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안 제46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6(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 중 하나로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전반의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보기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재해보상 급여와 관련하여 그 결정·지급 현황 등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재해예방 및 재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는 작성·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일차적인 주체로 설정하여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의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주관기관으로서 공무상 재해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적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직종별 위험요인 분석 등 공무상 재해의 예방과 재할 및 직무복귀의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

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동 통계는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계로, 통계 작성의 항목이나 입력 방식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될 것이 요구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재해 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통계의 구성 체계 등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³⁰⁾

30) 인사혁신처는 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 항목을 세분화하여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며, 각 기관이 재해 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6.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체계 마련(안 제46조의7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사후 관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7(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현행	개정안
	<u>할 수 있다.</u>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u>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무원의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업무상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무상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①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②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등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검진 및 검사 내용 및 각 기관의 확인사항(안) >

종류	주요 내용	각 기관의 확인 사항
일반 건강진단 (격년)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 소속 공무원의 수검 여부
업무상 건강진단 (수시)	- 건강장애 우려가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추가 건강진단	- 소속 공무원의 수검 여부 - 검진기관(의사)의 사후관리 소견
심리검사 (반기)	- 마음건강 상태, 영향요인을 스스로 확인하는 심리진단	- 소속 공무원의 수검 여부 - 기관의 전반적 마음건강 현황

자료: 인사혁신처

민간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제129조),³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특별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제130조),³²⁾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31조),³³⁾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그

3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3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33)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제134조),³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제137조),³⁵⁾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8조),³⁶⁾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34)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36)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제139조)³⁷⁾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는 고용주로서 행정주체가 지는 법적 책무 내지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민간 부문에 도입되어 있는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체계를 통해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소속 공무원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고,³⁸⁾ 위험직군 등 건강상 장애

37)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의 통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EDI)에 접속하여 대상자별 일반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업무상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조치³⁹⁾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위험요인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심리검사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들이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로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46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는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

39) 인사혁신처는 온라인 심리검사도구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포털) 및 마음건강센터 운영, 고위험군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전문의 진료 및 방문 상담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음.

요한 조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소속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 헌법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은 각 헌법기관의 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포괄적 위임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또는 심리검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를 대상으로 업무재배치 등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사항을 법문에 반영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는 한편,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는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구체적인 종류와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각 해당 기관별로 그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국회규칙 등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이나 심리검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업무재배치 등 조치는 질병예방 상담, 보건교육, 운동처방, 고충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등 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교류, 업무 전환, 휴가 또는 공무상 요양 신청 권고 등 인사상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갈

등의 소지를 내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적 요소의 도입, 인사상 조치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재해예방 사업 등 재원 마련의 근거 정비(안 제48조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비하고(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2) 현행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 제48조제1항 및 제2항----- ----- -----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현행	개정안
<u>부담금</u>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 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 정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 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생략) 5. ~ 8. (생략) 9. 제49조에 따른 <u>재해보상부담금</u>의 산정·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 한 사항 10.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 ⑥ (생략)	<u>상부담금</u> -----. ----- ----- ----- ----- ----- ----- -----.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 <u>재해예방및보상부 담금</u>-----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5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 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안 제48조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현행법 제48조는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제1항),⁴⁰⁾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원에 관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만을 두고 있음(제2항).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8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할·직무복귀의 촉진과 유족의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과 관련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48조제3항).

인사혁신처는 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사업은 매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그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소속

4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수혜 대상이므로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⁴¹⁾

법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이나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은 기관별로 관련 예산 규모의 격차가 상당한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산상의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인사혁신처장이 주관 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공무원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사업의 수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41)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업 현황

구 분	사업명	예산 규모(2025년도 기준)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세종/서울·과천·대전/영남·호남/인천·강원/제주/경남센터 운영 17억 1,500만원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법정부 건강안전(재해예방) 협의회 운영 1,200만원 -연구용역사업 : 심리재해 위험요인 진단가이드 개발 8,900만원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재활 사업	-재해예방교육 7억 700만원
		-재해예방 문화 확산·홍보 2억 700만원
		-연구용역사업 : 안전보건관리실태조사, 재해통계진단 및 개선 등 1억 7,300만원

또한, 행정주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이나 소속 공무원의 재할 및 직무복귀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안 제48조제2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복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용부담의 원칙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법문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⁴²⁾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한다.” 등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2) 현행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안 제49조 등)

현행법 제49조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을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를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제1항), 동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개정안은 급여에 드는 비용에 한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재해보상부담금”을 안 제4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재원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재해보상 급여의 재원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의 용도에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안 제48조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 원칙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면서 동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 대한 출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³⁾

다만, 현행법 제49조제3항은 급여의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된 재원으로 구성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전제로 동 부담금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차입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개편함에 있어서는 동 부담금 중 급여의 지출을 위한 비용과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을 구분하여 부담금 중 급여의 지출을 위한 비용으로 급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그 부족분을 차입할 수 있도록 차입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채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재해예방 사업 등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제3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생략) 5. ~ 8. (생략) 9. (생략) 10. (생략) ② (생략) ③ <u>인사혁신처장은</u>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u>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1조제3항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사업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고시의 경우 대외적 효력이 없어 사업을 위탁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참여 안내 및 협조 요청 등 수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탁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기타 : 용어의 정비]

1.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정비(안 제16조제2항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문 표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생략)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 ----- -----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 ----- -----.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 ----- ----- ----- -----. ----- -----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

현행	개정안
1. <u>채납처분</u>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채납액보다 적은 경우 2. 3. (생략)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u>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u>의 대 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 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u>결 손처분·채납처분</u> 5. ~ 8. (생략) 9. (생략) 10.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u>채납 처분</u>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 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③ (생략) ④ ~ ⑥ (생략)	1. <u>강제징수 또는 채납처분</u>----- ----- ----- 2. 3. (현행과 같음)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 ----- ----- ----- ----- <u>「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u> <u>「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u> <u>에 따른 채납처분</u>--.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결손처분·강제징수·채납처분</u> 5. ~ 8. (현행과 같음) 9.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② ----- <u>강제 징수·채납처분</u>----- ----- -----. ③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에 따라 국세의 “채납처분”이 “강제징수”로 법률 용어가 변경됨⁴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의 환수 등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용어를 법문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납액 징수행위를 해당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채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법률 용어를 변경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법 집행에 있어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2

44) 개정사유 : “채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인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하려는 것임.